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3111
------	------

2022.03.30.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3월 10일, 이태성 의원(찬성자 15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3월 16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2.3.3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태성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정부보다 먼저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정부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부 용어와 규정이 법률과 달라 조례의 적용과 해석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

- 이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위원회 관련 규정 등을 법률과 부합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필수노동자”와 “필수업종”의 정의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변경함(안 제2조).
- 나.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 다.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필수업종”을 “필수업무”로 변경함(안 제4조, 안 제7조).
-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 마.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요건과 수립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과 부합하도록 수정함(안 제6조).
- 바. 위원회 심의·자문 사항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수정함(안 제9조).
- 사.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명으로 하고, 위원장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며, 위원의 자격요건을 추가함(안 제10조).
- 아. 위원회의 소집 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14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업무종사자법”)의 제정(2021.5.18.)·시행(2021.11.19.)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부 용어와 규정을 법률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개정안의 발의 배경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과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한 보건의료, 돌봄, 물류, 대중교통, 교육·환경 등 필수적인 서비스 분야에서 종사하는 이른바 필수 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정부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발표하고(2020.12.14.), 「필수 업무종사자법」을 제정하였음(2021.5.18.).

< 「필수업무종사자법」 주요 내용 >

- | |
|---|
| <p>가. "필수업무"를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로 정의함(제2조제2호).</p> <p>나. "필수업무 종사자"를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제2조제3호).</p> <p>다.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제6조 및 제7조).</p> <p>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p>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제8조).

마.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9조 및 제10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원계획에는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제11조).

-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시행¹⁾ 하면서 법률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서로 다르거나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조례에 일부 포함되었음.
- 이에 「필수업무종사자법」 부칙에 법률 시행일(2021.11.19.)로부터 1년 이내에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서울시 조례를 정비하는 것임.

< 「필수업무종사자법」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

다. 주요 조문별 검토

(1) 정의 및 적용대상의 변경 등(안 제2조·안 제3조)

- 개정안은 “필수업종” 을 “필수업무” 로 변경하고, 법률과 동일하게

1)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1.1.7. 제정·시행 되었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외에 ‘서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위원회(이하 “필수노동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장이 정하는 업무’ 를 추가하고 있음(안 제2조제2호 가목·나목).

- “필수노동자” 또한 법률과 동일하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업무종사자로 규정하고, 필수노동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 시장이 정하는 사람’ 을 추가하였음(안 제2조제3호 가목·나목).

「필수업무종사자법」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p> <p>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필수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p> <p>3. "필수업종"이란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p> <p>1. (현행과 같음)</p> <p>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p> <p>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p> <p>3. “필수노동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p>

<p>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p>	<p>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생명·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시민과 필수적으로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p>	<p>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필수업무종사자 나.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삭 제></p>
------------------------------	--	---

- 「필수업무종사자법」은 조례상의 “필수업종” 대신 “필수업무”를 기준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면 재난대응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리, 서무 등의 지원업무까지 포함될 수 있고, 필수업종 배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워 비필수업종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필수업무종사자법」(제9조)은 지역적 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위원회가 필수업무와 필수업무종사자를 지정하도록 하였음.

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필수노동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장이 정하는 업무와 사람을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의 정의에 각각 추가한 것임.
- 한편, 개정안은 대면업무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필수업무의 범위를 대면업무로 한정하면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워지기 때문임.
- 정부의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20.12.14.)에서는 다양한 재난 상황을 대비해 대면업무로 한정하지 않고 보호·지원대상을 넓히고 있음.
- 다만, 조례의 목적(제1조)에서 여전히 대면업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수정의견 >

현 행	수정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밖에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대상을 ‘제2조에 따른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로 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조례가 ‘시장이 지정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필수업무와 필수업무종사자(필수노동자)는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임.

(2)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

- 개정안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되, 다른 조례에서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였음.
- 이는 재난 발생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 조례가 다른 조례에 우선함을 명시하여 유사시에 조례 적용상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목적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지원계획 포함사항의 변경(안 제6조)

- 개정안은 사전 예측이 어려운 재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재난 발생시에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음.
- 또한 지원계획의 수립목적이 발생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지원계획에 포함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삭제하고, 재난 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p> <p>2. 필수업종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p> <p>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p> <p>4.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p> <p>5. (생략)</p> <p>③ (생략)</p>	<p>제6조(지원계획 등) ① ----- 발생 시 -----</p> <p>-----.</p> <p>② -----.</p> <p>1.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 지정에 관한 사항</p> <p>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3. ----- 지원-----</p> <p>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p> <p>5.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 한편, 「필수업무종사자법」은 정부 지원계획에 ‘법·제도의 개선 사항’과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례에도 ‘제도 개선 사항’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4) 위원회 기능의 변경(안 제9조)

- 개정안은 「필수업무종사자법」의 시·도별 지역위원회 관련 규정에 맞춰 필수노동자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변경하고 있음.

「필수업무종사자법」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p> <p>2.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p> <p>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p> <p>2.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에 관한 사항</p> <p>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p>	<p>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p> <p>----- ----- ----- -----.</p> <p>1. 시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p> <p>2. 시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노동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p> <p>3. 시의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p> <p>4. ----- 필수노동자에 대한 ----- -----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p>

- 이는 「필수업무종사자법」에 규정된 법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법률과 조례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타당한 조치임.

- 다만, 「필수업무종사자법」은 지역위원회를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법정위원회로 규정하고, 그 명칭을 ‘시·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로 하고 있음.
- 따라서 필수노동자위원회도 “심의·자문”이 아닌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 필수업무 지정 및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수정의견 >

개 정 안	수정의견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심의 ----- <u>서울특별시 필수업무 지정 및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u> -----.

(5) 위원 정수와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등(안 제10조)

- 개정안은 위원회 위원을 15명으로 상향하고,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며, 위원의 자격에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u>1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 ----- <u>15명</u> ----- ----- ② ----- <u>시장</u> ----- ----- ③ -----

<p>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p> <p><u>1. 서울특별시의회의원</u> <신 설></p> <p><u>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u> <신 설></p> <p><u>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p>	<p>----- 시장----- -----.</p> <p><u>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u></p> <p><u>2.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u></p> <p><u>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u></p> <p><u>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u></p> <p><u>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p>
--	--

- 위원 정수는 「필수업무종사자법」에서 정부 위원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한 점을 참고한 것임.
- 또한, 「필수업무종사자법」이 시·도 위원회 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위원장의 자격을 종전의 국장급 공무원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 노·사 단체와 재난·노동 관련 전문가를 위원에 추가하여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음.
- 다만, 정부 위원회는 위원의 자격에 재난 대응과 관련된 부처별 공무원과 광역·기초자치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명시하고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비율(위촉직 40% 이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도 위원의 자격에 재난 대응과 관련된 서울시 부서별 공무원과 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반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6) 위원회 소집 요건 명확화(안 제14조)

- 개정안은 위원회의 소집 요건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는 「필수업무종사자법」에서 규정한 지역위원회 소집 요건을 조례에 동일하게 반영한 것이며, 재난 발생과 긴급대응을 전제로 하는 법률과 조례의 입법취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사전통보(7일 전까지)는 삭제되었음.

라. 종합의견

- 개정안은 「필수업무종사자법」의 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지원계획, 위원회 관련 규정 등을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고 있음.
-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률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개정안의 취지에 맞춰 조례의 목적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법정 위원회화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변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과 비율 등을 보다 명확히 필요가 있음.
- 한편, 조례의 시행(2021.1.7.) 이후 현재까지 필수노동자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도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태성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11
----------	------

발 의 년 월 일 : 2022년 03월 10일

발 의 자 : 이태성 의원(1명)

찬 성 자 : 김정태, 김평남, 김혜련,
김희걸,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성흠제, 송아량,
이경선, 이정인, 장상기,
전석기, 최웅식, 황규복
의원(15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정부보다 먼저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정부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부 용어와 규정이 법률과 달라 조례의 적용과 해석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 이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위원회 관련 규정 등을 법률과 부합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필수노동자”와 “필수업종”의 정의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변경함(안 제2조).
- 나.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3조).
- 다.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필수업종”을 “필수업무”로 변경함(안 제4조, 안 제7조).
-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 마.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요건과 수립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과 부합하도록 수정함(안 제6조).
- 바. 위원회 심의·자문 사항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에 부합하도록 수정함(안 제9조).
- 사.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명으로 하고, 위원장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며, 위원의 자격요건을 추가함(안 제10조).
- 아. 위원회 회의 소집 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타 : 없음.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노동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필수업무종사자

나.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필수업종의 업무”를 “필수업무”로 한다.

제5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에 따른 보호·지원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발생에 따른”을 “발생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원 사업 추진”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필수업종의 지정”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필수업종”을 “필수업무”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필수노동자”를 “필수노동자에 대한”으로, “지원에 필요한”을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1. 시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시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노동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시의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제10조(중전의 제9조)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중전의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시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다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필수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p> <p>3. “필수업종”이란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p> <p>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생명·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시민과 필수적으로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p> <p>제3조(적용대상)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난상황 및 특성, 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필수업종에</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p> <p>3. “필수노동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필수업무종사자 나.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p> <p><삭 제></p> <p>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p>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종의 업무가 중단없이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제5조(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종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생략)

③ (생략)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재 필수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 (생략)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필수업무-----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에 따른 보호·지원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 등) ① ----- 발생시 -

-----.

② -----
-----.

1.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 지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실태조사) ① -----

----- 필수업무-----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신 설>

제10조 ~ 제12조 (생략)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1. 시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시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노동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시의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 필수노동자에 대한 -----
-----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

----- 15명 -----
-----.

② ----- 시장-----
-----.

③ -----
----- 시장-----
-----.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 제13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④ (생략)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생략)

제15조(시행규칙) (생략)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시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다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협력체계 구축)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6조(시행규칙) (현행 제15조와 같음)

문서 번호

2022030400000004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이태성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류동균 주무관

접수일 : 2022.03.04

회신일 : 2022.03.07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 구성을 10인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증원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9,000천원(연평균 1,800천원)

○ 추계의 전제

- 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개정에 따라(10명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개정) 서울시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 위원이 15명인 것으로 하되 이 중 위촉직 위원은 10명으로 함(기존 위원회에서 늘어난 부분만 추계). 연 4회 개최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추계함
- 비용은 2023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9,000천원(연평균 1,8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안 제10조)	1,800	1,800	1,800	1,800	1,800	9,000
	소계(b)	1,800	1,800	1,800	1,800	1,800	9,000
	총비용(b-a)	1,800	1,800	1,800	1,800	1,800	9,000

- 서울시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 총 운영비 ≍ 9,000천원

- 산출방식 : 연간(2023~2027) 비용의 합산 : 1,800천원 × 5년
- 연간 위원회 운영비 ≍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 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 1,200천원 + 600천원
≍ 1,800천원

·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 위촉직 위원 수 × 1인당 회의참석 수당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10-8)명 × 150,000원 × 4회
= 1,200천원

※ 참석수당 지급기준은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기본료 10만원, 2시간 초과 비용 5만원 등 총15만원 기준임

· 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 전체 위원 수 × 1인당 업무추진비 단가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15-10)명 × 30,000원 × 4회
= 600천원

※ 1인당 업무추진경비 단가는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3만원으로 가정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무관 류동균

☎ 02-2180-7952

e-mail : rooster72@seoul.go.kr